

해외규제 모니터링 제9호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동향

“본 뉴스레터는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 ‘규제 리포트’와
법무법인 광장 민세동 변호사님의 칼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규제 리포트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동향 리포트 -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중심으로 -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

▣ 국제거래 확대에 따른 반부패 규범 제정

- 미국 의회는 1977년 미국 기업들의 해외 뇌물 제공 관행 근절 등을 통해 국제거래에서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을 제정하였습니다.
- 이후 FCPA는 1988년과 1998년 총 2회에 걸쳐 개정되었고, 이 중 1998년 개정으로 인해 외국 기업도 FCPA 적용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2월 기존 FCPA가 미국의 국가안보 및 경제적 이익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FCPA 개선 작업에 착수하였고, 같은 해 6월 FCPA 집행에 관한 新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 FCPA는 크게 반뇌물규정과 회계규정으로 구분되는데, 본 리포트는 FCPA 반뇌물규정 및 관련 가이드라인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FCPA와 관련하여 우리 기업이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 FCPA 위반 판단기준 및 반뇌물규정 적용 대상

- FCPA의 반부패 규정은, (i) 미국 내 증권 발행인(Issuer), 미국 거주자(Domestic concern) 등이(행위주체), (ii) 외국 공무원 등에게(행위객체), (iii) 사업의 획득 또는 유지를 위하여 부정하게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목적), (iv) 금전 또는 가치 있는 일체의 것을(목적물), (v) 제의, 공여(“제의 등”)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FCPA에 따른 ‘뇌물제공자’에 해당하려면 ①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거나 미국예탁증권(ADR)을 발행한 회사(15 U.S.C. 78dd-1, ‘미국증권발행회사’), ② 미국인 또는 미국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회사(15 U.S.C. 78dd-2), ③ 미국 영토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부패행위를 한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15 U.S.C. 78dd-3) 중 하나여야 합니다.

- ①, ②와 관련하여, ▲미국 영토 내의 행위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회사 뿐만 아니라 그 경영진, 임직원, 대리인, 주주 등도 '뇌물제공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FCPA 반뇌물규정 위반사례】

구 분	제재금 액수	요약
Ericsson	미화 약 12억 달러 (한화 약 1조 7천억 원)	• 스위스 통신회사 Ericsson이 전화선 등 통신 인프라 설치 계약 확보를 위해 외국 공무원들에게 뇌물 제공
Airbus	미화 약 20억 달러 (한화 약 3조 원)	• 프랑스 항공기 제조사 Airbus가 해외 항공기 판로 개척을 위해 제3자 사업 파트너를 통해 외국 공무원들에게 뇌물 제공
Goldman Sachs	미화 약 26억 달러 (한화 약 3조 8천억 원)	• 미국 금융회사 Goldman Sachs가 수익성 높은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미화 65억 달러 규모 채권 거래 인수 등) 외국 공무원들에게 뇌물 제공

- ③과 관련하여, 미국 정부는 미국 영토 내 행위를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미국 은행을 이용한 계좌이체 행위, 미국 회사 이메일을 이용한 행위, 미국 법인과외의 공모, 방조한 행위, 미국 대리인을 활용한 행위 등을 모두 미국 내 행위로 보아 FCPA에 대한 집행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우리기업이라도 ①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경우, ② 미국에서 미국예탁증권을 발행한 경우, ③ 미국 내에서 반뇌물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한 경우 FCPA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FCPA 관련 2025년 6월 발표 집행 가이드라인

“[FCPA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미국의 국익 수호로서] 이는 해당 기업의 국적이나 본점소재지와 무관합니다.”

— Matthew Galeotti, 미국 법무부(DOJ) 형사국장, '25. 6. 기자회견 中 —

- 美 법무부(DOJ)는 2025년 6월 새로운 집행 가이드 라인을 발표하였는데, FCPA 위반 여부의 핵심 판단기준이 '문제되는 행위가 미국 또는 미국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지'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새 가이드라인은 미국 국익을 고려한 FCPA의 전략적 집행 및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담 경감이라는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 구체적으로 새 가이드라인은 '① 카르텔 및 초국가적 범죄조직 척결, ② 미국 기업의 공정한 경쟁기회 보호, ③ 미국 국가 안보 증진, ④ 중대비위행위에 대한 집행 원칙, ⑤ 통상적인 비즈니스 행위에 대한 집행은 가급적 제외'를 주요 기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향후 FCPA 집행은 미국 기업보호 및 미국 국익 및 국가안보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우리기업이 미국 전략 인프라 관련 사업을 하는 경우, 미국 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카르텔과 초국가적 범죄조직과 관련된 행위를 하는 경우, 고액 뇌물 지급 등 중대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FCPA 집행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하여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FCPA 안내문에 따른 뇌물의 기준

“뇌물에 최소 금액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 미국 법무부·증권거래위원회 공동 발간 ‘FCPA 안내문’ 中 –

- FCPA는 ‘금전 또는 가치 있는 일체의 것’을 외국 공무원에게 주는 경우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 외국 공무원에게 무엇을 제공할 수 있고, 무엇을 제공하면 안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 美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공동으로 발간한 ‘FCPA 안내문’ (A Resource Guide to the U.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에 따르면, 뇌물 여부 판단에 최소 금액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부정한 목적(corrupt intent)의 존부에 따라 뇌물 해당 여부가 결정됩니다.
 - FCPA는 ▲통상적인 홍보 목적 접대, ▲사업장 방문 시 식사 제공 등 합리적인 사업상 비용의 지출의 경우 FCPA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미국 제약회사 Eli Lilly and Company가 2006년부터 2009년 사이 자회사 Lilly China를 통해 중국 정부에 고용된 의사들 및 보건 분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업상 우위를 얻기 위해 소액의 선물을 제공한 점에 대해 美 증권거래위원회가 FCPA 위반이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 美 증권거래위원회는 ▲Lilly China가 의사 및 공무원들에게 제공한 선물이 와인, 식사, 목욕탕 방문 등이었고 ▲그 액수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FCPA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영국 주류회사 Diageo plc가 자회사를 통해 한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자사가 판매하는 위스키의 매상 증진 및 세금 혜택 등을 위해 향응을 제공한 점이 FCPA 위반으로 판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 美 증권거래위원회는 접대 자체가 아니라 정부 결정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이 FCPA 위반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우리기업들이 해외 공무원에게 기념품 등을 제공할 때, 그 기념품이 통상적인 비즈니스상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액의 기념품이라는 것과 부당한 목적과 무관하게 지급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외국 자회사에 대한 FCPA 적용 사례 : Grupo Aval 사건

“모호하게 기재된 서비스와 증빙이 부족한 지출로 뇌물 자금을 조성한 이번 사례처럼, 느슨한 통제 환경은 부정행위가 피어나기 쉬운 비옥한 토양이 됩니다.”

– 미국 SEC FCPA 부서장 Charles Cain, '23. 8. SEC 보도자료 中 –

- 미국증권발행회사인 Grupo Aval Acciones y Valores S.A.(Grupo Aval) 및 그 자회사 Corporacion Financiera Colombiana S.A.(Corficolombiana)는 2023. 8. 10. FCPA 위반으로 美 법무부 및 증권거래위원회에 각각 미화 약 4,000만달러의 제재금 및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미국증권발행회사 Grupo Aval은 콜롬비아 공화국 증권회사 Corficolombiana를 자회사로 두고 있었습니다.
 - 콜롬비아 정부는 2009년 역대 최대 규모(약 528km)의 고속도로 인프라 프로젝트 Ruta del Sol II의 입찰을 개시하였고, Corficolombiana는 Grupo Aval의 대리인으로서 브라질 건설회사 Odebrecht S.A.와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수주 및 시행하였습니다.
 - 위 사업 시행 과정에서 Corficolombiana는 Odebrecht S.A. 등을 통해 콜롬비아 공무원에게 최소 미화 2,800만 달러 이상의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공사 구간을 확장하여(Ocaña-Gamarra Expansion) Grupo Aval에게 미화 약 3,200만 달러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였습니다.
- 이 사건의 시사점은, Corficolombiana가 콜롬비아 소재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증권발행회사인 Grupo Aval의 자회사이자 대리인이라는 이유로 미국증권발행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15 U.S.C. 78dd-1의 적용 대상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 SEC는 Grupo Aval의 임원 中 일부가 Corficolombiana의 이사였던 점 등을 근거로 Corficolombiana를 Grupo Aval의 대리인으로 인정하였습니다.
- FCPA가 폭 넓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기업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FCPA 위반 혐의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항변

- FCPA는 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주장할 수 있는 두가지 적극적 항변(Affirmative Defenses)사유로, ① **현지국가의 성문법상 허용되는 행위라는 항변**, ② **합리적이고 진정한 사업비용이라는 항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지국가의 성문법상 허용되는 행위 항변**은 문제된 선물·지급 등이 해당 외국의 성문법령상 적법하므로 그 행위를 FCPA 위반으로 판단해서는 아니된다는 항변입니다.
 - 항변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문제된 선물·지급 등이 해당 외국의 성문법상 적법*함을 입증해야 하고, 해당 국가에 선물·지급 등을 금지하는 성문법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적법성은 행위 당시 적용되던 외국의 성문법률 및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

- 성문법상 공무원에 대한 선물·지급을 명시적으로 허용한 예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실무상 본 항변을 활용할 수 있는 사안은 많지 않습니다.

■ 합리적이고 진정한 사업비용 항변은 외국공무원에게 제공한 지급 등이 합리적이고 진정한 사업비용(여행비·숙박비 등)이라는 항변입니다.

- 해당 지급이 ①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실제 비용에 대한 지급이어야 하고, 그 금액이 사업 목적에 비추어 ②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합니다.
- 이러한 항변을 할 때, 해당 비용의 사업 목적의 적법성, 해당 비용의 진정성·사업관련성·합리성 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승인, 적법성, 지출에 대한 증빙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 미국 정부는 자국의 최근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동향을 요약하는 키워드로 ‘미국 이익 중심의 집행(U.S. interests-focused enforcement)’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美 법무부는 '25. 6. FCPA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이익과 관련되지 않은 행위는 외국 사법당국이나 적절한 규제기관에 맡겨져야 한다”라고 천명하여 FCPA의 적용 한계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 미국 FCPA가 미국 법이어서 우리기업에게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기보다 위 FCPA가 전세계 기업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부패 방지 및 회계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 내 안정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산업·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주요 국가들의 최신 반부패 정책·법제 등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의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담당자_ 국제법무지원과 검사 박제연, 법무관 이동건